

## 서 면 답 변 서

- 질의 의원 : 유판호 의원
- 답변공무원 : 기획감사담당관
- 질의 요지 : 읍면별 집행잔액 상이한 사유

### □ 답변내용

- 읍면별 사업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 사유는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부분의 감사자료 작성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에 있어 화원읍의 경우 계약금액을 사업비로 작성하여 집행하므로써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논공읍의 경우 공사금액을 사업비로 작성하여 집행하므로써 공사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타 일반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9읍면이 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량사업비의 경우 감사자료 작성에 9읍면이 일치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상이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2005년 12월 5일

기획감사담당관 전재경(인)